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목 차



1. 개 요	1
2.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	2
3.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	6
4.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11

1. 개 요

가. 목 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에 필요한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

나. 근 거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81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하 “보조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다. '26년 조기폐차 사업 예산(국비) 및 물량

- ☐ 사 업 비 : 115,000백만원
- ☐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

< '26년도 시·도별 사업량 및 국비 지원내역 >

(단위: 백만원, 대)

구분	총계		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계	115,000	112,880	26,400	44,000	79,850	63,880	8,750	5,000
서울	16,675	13,650	372	620	16,250	13,000	53	30
인천	5,017	4,130	240	400	4,375	3,500	403	230
경기	22,425	20,900	3,600	6,000	18,125	14,500	700	400
부산	7,620	8,200	2,520	4,200	4,750	3,800	350	200
대구	2,336	2,565	810	1,350	1,500	1,200	26	15
광주	2,757	2,218	39	65	2,625	2,100	93	53
대전	2,548	2,630	720	1,200	1,688	1,350	140	80
울산	2,250	2,150	450	750	1,625	1,300	175	100
세종	590	550	90	150	500	400	-	-
강원	6,350	7,050	2,550	4,250	2,750	2,200	1,050	600
충북	4,560	4,680	1,320	2,200	2,750	2,200	490	280
충남	8,700	8,800	2,400	4,000	5,250	4,200	1,050	600
전북	5,837	6,050	1,800	3,000	3,250	2,600	787	450
전남	4,104	3,241	270	450	2,625	2,100	1,209	691
경북	8,362	9,331	3,309	5,515	4,062	3,250	991	566
경남	12,619	14,005	4,800	8,000	6,725	5,380	1,094	625
제주	2,250	2,730	1,110	1,850	1,000	800	140	80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조기폐차 1,2차 보조금 및 대상차량확인 비용 등 포함

※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6년까지만 지원 예정으로, 지자체별 사업 추진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적정 범위에서 5등급 자동차 우선지원 필요 등 검토

2.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함)

나. 보조금 교부조건

- ☐ (교부 조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에서 운행되는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운행대수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되, 집행실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교부결정을 할 수 있음
- ☐ (지방비 보조) 지자체의 장은 조기폐차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국비 50% (단, 평택시는 70%), 지방비 50%
- ☐ (집행 준수사항) 지자체의 장은 보조금 집행 시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참고 3), 동 지침 및 보조금 지급 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 집행기준 준수

다. 보조금 용도 및 관리

- ☐ (보조금 용도) 보조금 집행은 '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지원에 한함
- ☐ (별도계정 관리) 지자체의 장은 교부받은 “운행차 저감사업” 보조금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 (보조금 집행관리) 지자체의 장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보조금 산정,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을 확인하여 지원
- ☐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의 장은 '26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대상 경유차 현황,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 ☐ (절차 준수 및 시스템 의무 사용)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업무 대행기관 포함)는 반드시 동 지침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신청접수 및 집행실적 관리 등)하여 동일 차량에 대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사이트 주소)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 지자체는 '26년 보조사업 계획 수립 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예산, 물량), 추경 및 재배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함

라.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 **(교부신청 및 교부)** 지자체의 장은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시스템으로 신청(제출)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함

유역(지방청)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강원도, 충북(충주시 등 5개 시·군)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금강청	대전, 충남, 세종, 충북(청주시 등 6개 시·군)	전북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제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여 백”	

- 광역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작성시 시·군별 예산 계획을 첨부하여 제출(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여야 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교부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자체의 장이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 지자체의 장과 유역(지방)환경청장은 '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이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취소)** 지자체의 장은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보조금 결정 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반납
 -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 지급 제한)** 지자체의 장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거나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에 따른 운행제한(미세먼지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운행제한 포함)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처분 유예 중인 차량은 적용하지 아니함

마. 보조금 집행 대상

- (대 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우선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가. 조기폐차 가-2. 절차(15p)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전 폐차를 신청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에 따른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폐차를 완료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최우선 지원)

※ “가~나” 이외에 모두 동 순위이며, 각 지자체는 우선순위 별도 적용 가능

나.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5등급 해당),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차량 또는 건설기계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라.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가~라” 이외에 우선순위 별도 추가 가능

- ② 1인이 다수의 물량을 신청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기폐차 신청 시 당해연도 1인당 최대 대수를 제한하거나 1인당 1대에 대하여 우선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예시) 기간을 정하여 접수 받아 1인 1대로 우선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적정 범위에서 다수 신청 차량에 대한 지원 여부 검토 등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자에 대한 당해연도 조기폐차 신청 누적 대수 확인 가능(26년 상반기 오픈 예정)

□ (조기폐차 기준)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기준(사용본거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류 도착일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온라인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확인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
-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3.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

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건설기계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건설기계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단위 : 만원)

구 분	총중량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굴착기	①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지게차	① 9톤 미만	1,050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 상한액 및 지원율 적용 기준

-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 차량기준가액표에 '07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6년 차량가액은 '07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립,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2차 보조금 포함)
 - ※ 대상자 선정 전 절차('선폐차')는 선폐차 접수증(별지 제6호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2차 보조금 포함)
- 지자체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서류 도착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 여부를 확인
 - ※ 단, 보조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조기폐차 후 수출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가 국내에 재등록되어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mecar) 차대번호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함
 - ※ 또한,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조치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저소득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지원 불가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 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단,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은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나.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

- 조기폐차 신청(4. 가-1 ①) 또는 선평차 신청(4. 가-2 ①)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 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2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조기폐차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다음 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후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지게차 폐기 후 신규로 굴착기를 구매하거나, 굴착기 폐기 후 신규로 지게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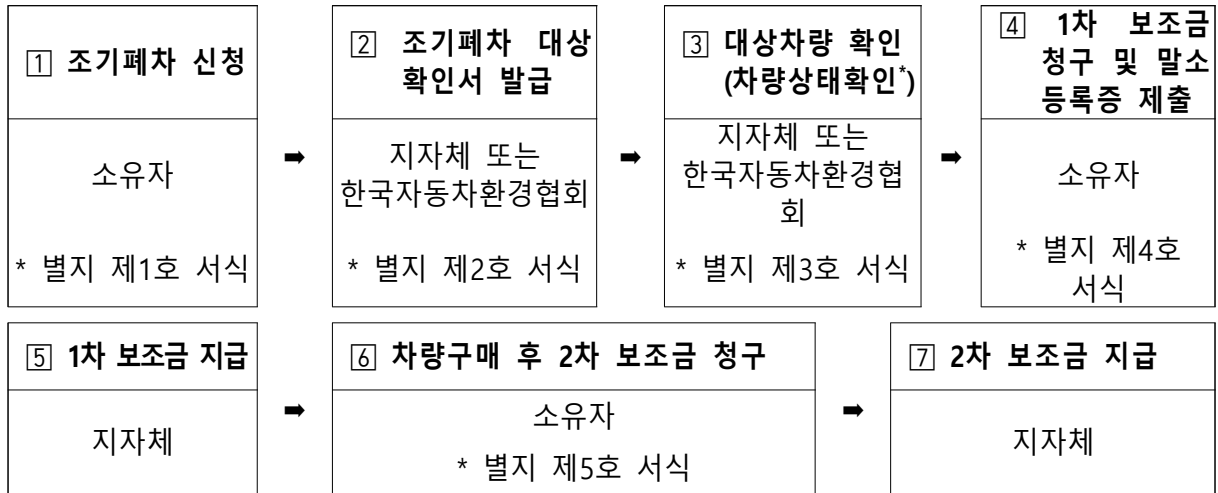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율

구분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4.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 보조금 지급 절차

가-1. 대상자 선정 후 폐차 시 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신청

- 차량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26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 수도권 시범사업 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확대)
- 신청서(별지1호) 제출 후 폐차 말소일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자치단체는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될 경우 일정기간 접수를 중단하는 등 신청자 폭주로 인한 대기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민원 해소

②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

*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 가능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원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가액을 산정
 - 위 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안내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1차 보조금 지급 불가 안내

③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차량상태확인을 받도록 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

※ 지자체는 사업 공고시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소유자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현장)으로 확인 가능

※ 다만, 대상차량확인시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하여야 함을 사전고지하여야 함

- 대상차량확인 진행 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잔여 예산을 확인 후 순차적으로 대상차량확인을 진행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 등 우선 순위가 높은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을 먼저 진행

④ (1차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등 제출)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 부담금 수시분 납부를 완료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등 첨부서류 제출

*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1차 보조금 청구를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같음

** 해당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과에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로(팩스·사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차량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1차 보조금 청구 가능('26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 수도권 시범사업 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확대)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2개월 경과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1차 보조금 지급 불가하나, 신차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1차 보조금 청구 기간 연장 가능

* 신차 매매 계약서, 출고 지연서(제작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 등을 확인하여 연장

** 입원, 해외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연장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해당자에 한함)

※ 지자체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1차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1차 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1차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을 사전 고지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가 말소 후 1차 보조금 청구 시 가급적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
- ※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차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⑤ (1차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1차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⑥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2차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를 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자체에 제출

*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2차 보조금 청구를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같음

- 차량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2차 보조금 청구 가능('26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 수도권 시범사업 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확대)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4개월 경과 후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시 2차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나, 예산소진, 신차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2차 보조금 청구 기간 연장 가능

* 신차 매매 계약서, 출고 지연서(제작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 등을 확인하여 연장

** 입원, 해외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연장 가능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인한 2차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추가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차량 등록 소유자가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2차 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을 사전 고지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가 2차 보조금 청구 시 가급적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mecar)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

※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⑦ (2차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2차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동일 차량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후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며, 지자체장은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받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발급기관(예시)
교통사고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도난	
천재지변	소방서, 지자체 등
차량 고장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

가-2. 대상자 선정 전 폐차(이후 '선평차') 시 절차(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① (선평차 신청)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대상자 선정 전 폐차(선평차)를 반드시 표기)

- 차량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26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 수도권 시범사업 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확대)
- 신청서 제출 후 폐차말소 시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안내
- 가-1. 절차에 따라 기 접수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대상자로 미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선평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 가능(별지 제1호서식에 선평차 신청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미해당으로 기재한 경우에 한함)

② (선평차 접수 확인증 발급(보조금 미산정))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 제출 시 10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 후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평차) 접수 확인증(별지 제6호 서식) 발급

- 신청 접수 시 위 절차로 1차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상태확인 및 말소등록증 제출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기준은 차기 대상자 선정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기준을 따르게 됨을 안내
- 대상차량확인을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1차 보조금 지급 불가 안내

③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평차) 접수 확인증(별지 제6호 서식)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 상태 확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차량 확인을 하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

④ (선평차 후 말소등록증 등 제출) 차량 소유자는 대상차량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차말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를 완료하고, 지자체에 말소등록증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제출

* 해당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과에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로 팩스·사진 등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해당자에 한함)

※ 지자체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1차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보조금 산정))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선포차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증 접수 이후 차기 대상자 선정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차주에게 발급

- 이 경우,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 기준가액은 신청일 기준 당해연도 1분기 기준으로 적용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상한액, 지원율 등)은 차기 대상자 선정 당시 기준으로 적용

*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 가능

⑥ (1차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지자체에 제출

*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1차 보조금 청구를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같음

※ 가급적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5호 서식)를 같이 제출받아 지급 처리

- 차량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1차 보조금 청구 가능('26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 수도권 시범사업 후 수도권의 지역으로 확대)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2개월 경과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1차 보조금 지급 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1차 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1차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가 말소 후 1차 보조금 청구시 가급적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

※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차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⑦ (1차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1차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이후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절차 및 지급 방식 등은 가. 보조금 지급 절차를 따름

나.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보조금 지원

- (제출서류)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제출 시 관할 지자체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지자체의 예산 등을 감안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¹⁾(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²⁾ 등으로 확인

1)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택 1
확인 기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범위 해설서」(60~ 68페이지 등)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판단
비고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지방중기청에 문의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지자체는 공동명의자일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 모든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
-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업종별 제한이 4대로 동일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A(2대 폐차)	A(2회), B(2회 간주)	-
② A(소상), C(비소상)	A(2대 폐차)	A(4회), C(2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비소상), D(소상)	D(2대 폐차)	C(4회 간주), D(2회)	모든 명의에 C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④ D(소상), B(비소상)	D(2대 폐차)	D(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B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업종별 제한이 상이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업종 제한 대수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A(4대)	A(4대 폐차)	A(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② A(소상), C(소상)	A(4대), C(9대)	C(9대 폐차)	적용 불가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소상), D(비소상)	C(9대)	C(9대 폐차)	C(9회), D(9회 간주)	모든 명의에 C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사안별 저소득층 차량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명(법인명)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 - ____-*****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년 ☐ 배기량()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중량(화물)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대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규격(건설기계)	☐ ()	
		☐ 연식()년 ☐ 배기량()CC ☐ 용도()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부착가능 ☐ 부착불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저소득층 ☐ 소상공인 ☐	원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중고차		원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년 ☐ 배기량()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중량(화물) :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원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신차 ☐ 중고차)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시장(지사) 귀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반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년 ☐ 배기량()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 규격(건설기계)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같음)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사업명		‘26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내역	구분		합계	DPF	조기폐차	PM·NOx 저감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26 목표	금액						
		물량						
	금회 신청	금액						
		물량						
	신청 누계	금액						
		물량						
	사업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월)

(보고기관 : 00000)

1. 저공해조치 실적

(단위 : 대)

구분			총계		1월		2월		...	
합 계			계	실	계	실	계	실	계	실
소 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소 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 소형								
		RV, 승합 화물								
PM·NOx 저감장치										
차량 폐차 및 건설기계 폐기	소 계									
	5등급	소 계								
		RV, 소형 승합								
		중 소형 화물								
		버스, 대형화물								
	4등급	소 계								
		RV, 소형 승합								
		중 소형 화물								
		버스, 대형화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펌프·믹서)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	DPF	소계								
		복합대형								
		복합중형								
	엔진 교체	소계								
		지게차	2톤							
			4톤							
			6톤							
			14톤							
			20톤							
			30톤							
		굴착기	5톤							
			14톤							

2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1월		2월		...		
합 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 계											
	DPF	소 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 소형	RV, 승합									
			화물									
	PM·NOx 저감장치											
차량 폐차 및 건설기계 폐기	소 계											
	5등급	소 계										
		RV, 소형 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4등급	소 계										
		RV, 소형 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펌프·믹서)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	DPF	소계										
		복합대형										
		복합중형										
	엔진 교체	소계										
		지게차	2톤									
			4톤									
			6톤									
			14톤									
			20톤									
			30톤									
		굴착기	5톤									
14톤												

3. 특이사항

※ 부진사유, 향후 사업전망, 조치계획 등 별지 작성

< 참고 1 >

< 조기폐차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A해지/ C체결)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위·수탁 체결)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필요시 지자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진행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